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2008. 11. 26

국회의원 정미경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아동학대예방사업 소개

1.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
 - 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 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내용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
 - 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근거 및 법적지위
 -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현황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흐름도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이해
 - 가. 상담원 자격기준
 - 나. 상담원 인력현황
 - 다. 상담원의 주요업무
 - 라. 상담원의 근무환경

III.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실태

1.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2.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 현황
 - 가.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통계
 - 나.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유형별 현황

3.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 사례

- 가.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폭력 및 기물 파손 사례
- 나. 가정방문 중 일어난 상담원 상해 사례
- 다. 법원 증언 후 발생한 상담원 신변위협 사례
- 라. 학대행위자가 흉기로 상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 마. 학대행위자에 의한 전화협박 및 신체폭력 사례
- 바. 학대행위자의 언어적·물리적 폭력행사 사례
- 사. 학대행위자의 기물 파손 및 기관 무단침입 사례
- 아. 학대행위자가 흉기를 사용해 상담원을 위협한 사례
- 자.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성 희롱 사례

IV.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관련 문제점

-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조사권 미부여
- 2. 경찰의 현장조사 동행 협조 미비
- 3. 상담원의 법원 증언 시 신분노출로 인한 신변위협
- 4. 상담원 소진 및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V. 외국의 상담원 신변안전보장 제도 탐색

- 1. 미 국
 - 가. CPS Worker 신변안전보장 제도
 -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 다. 사회복지사 신변안전보장 제도

2. 일 본

가. 아동상담소 직원 신변안전보장 제도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3. 대 만

4. 캐나다

VI.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1. '아동복지법 제 30조' 조사자의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명시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협조요청 시 경찰의 동행의무에 관한 법 조항 제정
3. 증인신상정보 비밀보장 및 증인보호제도 마련, 증인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
4. 가중처벌에 대한 고지 및 교육
5. 피고인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 행사범위 제한
6.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보완 및 강화
7.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통지
8. 정부의 상담원 신변안전 관련 재정지원

VII. 참고문헌

※ 부록: 아동복지법

I. 들어가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전국에 중앙을 포함하여 44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하여 현장조사, 가정방문, 상담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욕설, 폭행, 협박을 당하는 등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재판진행과정이나 대질신문, 증인반대신문,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등을 통해 노출되어 피고인인 학대행위자로부터 보복과 협박을 당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현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수행태도 및 수행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상담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아동보호업무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례개입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보다 안전한 업무 환

경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변안전위협 실태와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상담원 신변안전보호제도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아동학대 예방사업 소개

1.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¹⁾

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목적

□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함
-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권익과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배려 받도록 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

□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를 조성함
-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함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전화(129) 및 아동상담전용전화(1577-1391)를 통한 24시간 신고접수(단, 상담원의 업무 시간 이후 혹은 기관 내 상담원이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 중인 경우에는 신고전화를 착신할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
- 접수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이 포함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보존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파악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모니터링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 학대행위자 교육
- 일반 부모교육
- 피해아동 재학대 예방교육
- 일반아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 체벌이나 방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아동상담전용전화(1577-1391)에 대한 홍보
- 공익광고,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시·도 행정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이해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근거 및 법적 지위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위 단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아동복지법 상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결정을 자신의 이름과 책임 하에 수행하게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게 됨.²⁾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메뉴얼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현황

- 2008년 현재 중앙을 포함하여 전국에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2009년 7월부터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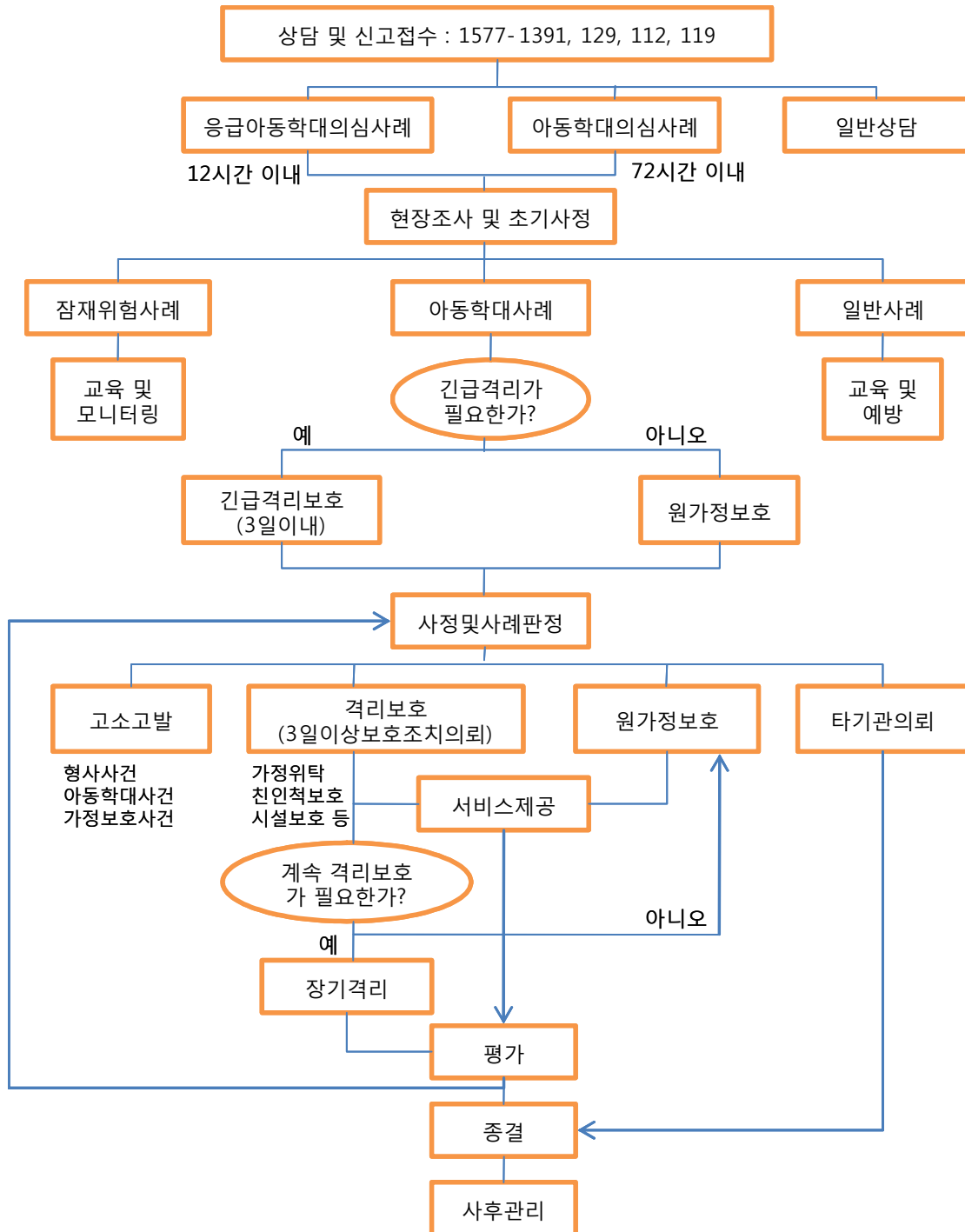
•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

(2008년 11월 현재)

지역	기관명	설치장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역삼2동 781-46 (www.korea1391.org)	02-558-1391
서울 (7개소)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02-2040-4200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cps.dbnawoori.seoul.kr)	02-2247-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내발산2동 651-20 성원빌딩2층 (www.goodneighbors.org/local/gangseo)	02-3665-5183,4,5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ep1391))	02-3157-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 유현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yongdungpo)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안암동 4가 15-6 서진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seongbuk)	02-923-5440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창전동 389-5 2층 (www.mapo.sc.or.kr)	02-422-1391
부산 (2개소)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adong.busan.go.kr)	051-242-139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거제1동 223-6 5층 (www.bd1391.or.kr)	051-507-1391
대구 (1개소)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053-422-1391 ~ 2
인천 (2개소)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주안6동 969-2 (icchild.sc.or.kr)	032-434-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부평5동 132-21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inchon)	032-515-1391
광주 (1개소)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쌍촌동 1355-1 (www.cyber1391.or.kr)	062-385-1391 ~ 3
대전 (1개소)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중촌동 23-9 (www.goodneighbors.org/local/daejon)	042-254-6950 ~ 5
울산 (1개소)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성안동 2지구 24B-10L (www.ulsan1391.or.kr)	052-245-1391
경기 (7개소)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37-11 (www.goodneighbors.org/local/suwon)	031-245-2448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의정부동 598-2 금구빌딩 3,4층 (www.goodneighbors.org/local/ui1391)	031-877-8004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sungnam)	031-758-1385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 충현빌딩 102호 (www.goodneighbors.org/local/goyang)	031-966-1391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6-4 오승빌딩4층 (www.goodneighbors.org/local/hwaseong)	031-297-6587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www.bucheon.sc.or.kr)	032-662-2580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 금곡동 651-10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031-592-9818

지역	기관명	설치장소(홈페이지)	전화번호
강원 (3개소)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033-244(3)-139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kd1391.or.kr)	033-535-6350~3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773-1 (www.goodneighbors.org/local/wonju)	033-766-1391
충북 (3개소)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상당구 올량동 1009 (www.goodneighbors.org/local/cb)	043-217(6)-1391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 종합보건복지센터 2층 (www.cchkorea.org/ccpa)	043-645-9078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www.cbnb1391.org)	043-731-3685~7
충남 (2개소)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시 성정동 1007-1 (www.goodneighbors.org/local/chonan)	041-578-2655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보령시 동대동 1250 (www.goodneighbors.org/local/boryeong)	041-931-6941
전북 (3개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	063-283-1391~4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하정동 8-2 (www.goodneighbors.org/local/namwon)	063-635-1391~4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신동 767-6 (www.goodneighbors.org/local/iksan)	063-852-1391
전남 (2개소)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용당동 561 (www.e1391.or.kr)	061-753-5125-8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상동 928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mokpo)	061-285-1391
경북 (4개소)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옥동 974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www.ad1391.org)	054-853-1391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pohang)	054-284-1391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도량1동 666번지 (gumi1391.or.kr)	054-455-1391
경남 (2개소)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마산시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봉곡동 21-5 2층 (www.knw1391.or.kr)	055-747-8174,5,6
제주 (2개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064-712-1391~4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98 (www.sgp1391.org)	064-732-1391~2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흐름도



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이해

가. 상담원 자격기준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5.11.16, 2006.1.12, 2008.2.29>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별표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

단계	교육과목(시간)	이수시간 (총 100시간)
기본교육	1.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4) 2. 아동복지법의 이해(4) 3. 아동학대원인 및 영향(8) 4.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8) 5.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8)	32
	1.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2. 위기개입(6) 3. 아동분리와 배치(6) 4. 학대유형별 개입방법(12)	32
	1.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8) 2. 통합적 접근방법(8)	16
전문교육	1.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8) 2. 학대유형별 상담사례 실습(12)	20

나. 상담원 인력현황

- 2008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사례수의 증가, 기존 아동학대사례의 누적으로 인해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각한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상담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1명 이상,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7명 이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권고되어있음³⁾

□ 2006년에 이루어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남자가 38.1%, 여자가 61.9%로서 여자 상담원이 남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을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65.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상담원이 20대로 조사되었고, 30대가 29.8%, 40대 이상이 5.1%로 조사되었음.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상담원의 69.8%가 미혼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자는 16.7%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미혼으로 조사되었음. 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대부분이 20대의 미혼여성으로 나타나 현장조사와 학대행위자 치료 등의 업무 수행 시 신변안전의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4).

3) 보건복지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4) 오승환,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 및 성과 분석

•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현황 • •

(2008년 4월 현재)

지역 및 기관		항 목	상담원 수(단위: 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0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6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6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6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6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7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7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4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6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3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7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6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7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8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6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1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6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6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6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4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4
강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7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7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4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9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5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5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8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4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6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7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4
경북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8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4
	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		6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6
경남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8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4
	서귀포아동보호전문기관		3
계			273

다. 상담원의 주요업무⁵⁾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주요업무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 각종 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 아동학대예방 홍보포스터, 소식지 등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아동학대인식증진을 위한 전국규모 캠페인
- 언론홍보활동
 - 공익광고 제작 및 정기적인 방영을 통한 언론 홍보 활동 강화
- 인터넷 홍보
 -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아동복지 관련학과 학생, 관련기관 종사자, 일반시민들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식과 각종 정보 및 자료게시

□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원, 의료인,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 시행
- 각종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해외아동보호체계 연수

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수행
 -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행정기관, 사법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관리
 - 아동학대 사례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정형화
- 협력기관 실무자 workshop 실시
- 아동학대 관련기관 협력체계 매뉴얼 개발, 보급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정책제안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간
- 연구보고서 발간
- 기획포럼 개최

□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의견제시
- 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아동학대 관련제도개선 T/F 구성 및 활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운영

- 분기별 아동학대 통계분석 및 현황보고
- 아동학대 통계분석을 통한 현황파악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교육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보수교육
- supervisor 양성교육(외부전문가 사례 수퍼비전)
- 성학대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 업무수행지침 및 각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사정척도 수정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지표 개발

□ 아동학대사례개입

- 국제아동학대사례 개입 및 관리
 - 외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의뢰한 사례 또는 관할지역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개입
 - 단, 국제아동학대사례일지라도 관할지역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조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자원동원

- 웹캠페인을 활용한 자원동원
- 제휴마케팅을 활용한 자원동원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주요업무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아동학대 신고접수

- 아동상담전용전화(1577-1391) 운영 및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전화(129)를 통한 신고접수
-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신고접수
- 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 관련기관 의뢰에 의한 신고접수
- 경찰에 의한 신고접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나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경찰에게 협조 요청

- 사례판정

- 자체사례회의 및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사례 판정

- 피해아동 보호조치

- 심각한 신체학대 또는 성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처치 및 증거확보
- 일정기간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기관 내 일시보호 또는 친인척, 타 시설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상담 및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 피해아동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재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실시
 -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연계 등의 지원 제공
- 종결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 입력

□ 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 실시
- 학대행위자 상담 및 치료
 - 학대행위자의 재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실시

□ 일시보호

- 일정기간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관 내 일시보호시설로 피해아동 분리
 - 일시보호 된 아동의 심신안정 도모
 - 일시보호 된 아동의 생활지도 및 사회적응지도 실시

□ 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

-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교육
 -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제공 및 올바른 양육기법 등 부모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일반인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아동학대행위자 교육
 - 재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행위자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교육현황 입력

□ 홍보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통한 홍보
 -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홍보현황 입력

□ 네트워크 구축

-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파출소, 병원,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자원개발 및 연계

아동복지법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라. 상담원의 근무환경⁶⁾

-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상담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29.9개월로 조사되어 2년 반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년에서 3년 근무한 상담원이 40.6%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 35.7%, 3년 이상 근무한 상담원도 23.7%로 조사되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9.64시간이며, 최소 8시간에서 최대16시간으로 나타났음.

- 200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1인당 평균사례 수를 살펴보면 평균 33.9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소1건에서 최대 141건으로 나타나 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에서 규정한 아동보호서비스 담당 직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 12-17인 기준에 비추어 2-3배 이상 높은 사례 수로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매우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년 동안 이직한 직원 수는 평균 1.95명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0명까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종사자 7.9명 중 2.0명이 이직한 것으로 이직률 25.3%를 보임.

6) 오승환,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 및 성과 분석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실태

1.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⁷⁾

- 2003년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의 91.7%(88명)가 업무 수행 중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는 현장조사나 가정방문 시였고(84.3%), 다음은 기관으로 가해자가 찾아왔을 때, 현장조사나 가정방문을 나가기 전,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차량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동할 때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2. 상담원 신변위협 현황

가.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통계

- 조사기간 : 2008년 5월 1일 ~ 7월 31일
- 위협사례 발생 해당 기관 : 전국 43개소 중 36개소
위협사례 발생 해당 없는 기관 : 전국 43개소 중 7개소

7)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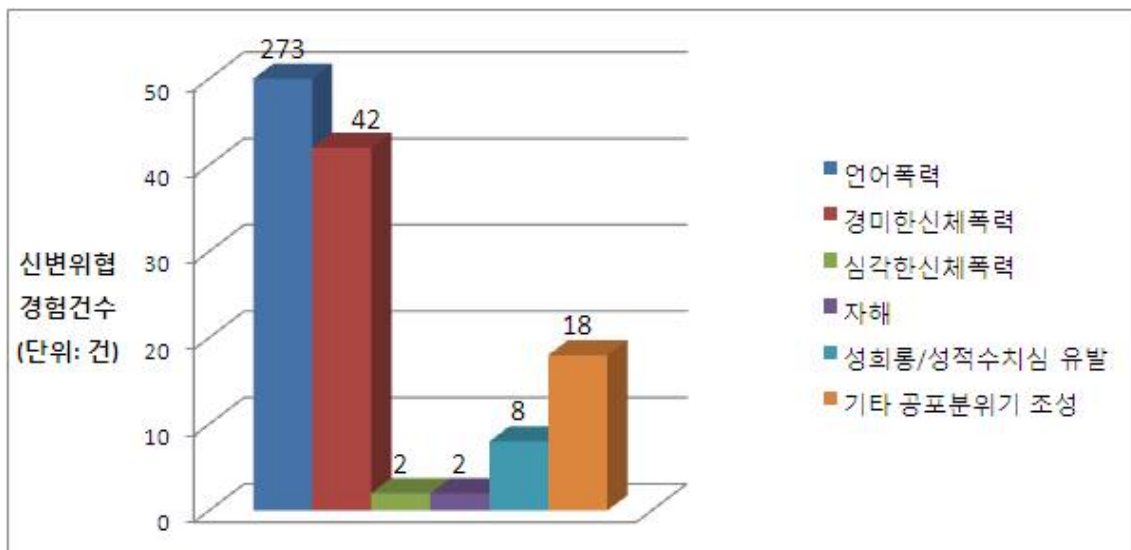
• •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통계 • •
(업무과정에 따른 신변위협 유형)

(단위 : 건)

업무 과정		신변위협유형*						총 계
		언어폭력	경미한 신체폭력	심각한 신체폭력	자해	기타 공포분위기 조성	성희롱/ 성적수치심 유발	
현장조사 時	경찰동행	11	6	-	-	1	-	18
	경찰 비동행	79	18	-	1	3	1	102
조치 후 사례개입 時		143	18	1	1	13	7	183
사례종결 이후 (학대행위자가 보호 /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 신변에 위협을 가한 경 우 포함)		40	-	1	-	1	-	42
총 계		273	42	2	2	18	8	345

* 중복포함

나. 상담원 신변위협 경험 유형별 현황



□ 언어폭력

- 상담원에게 욕설, 헐박 등을 가함
- 구체적인 예 :
 - “죽여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에 칼을 꽂아버리겠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칼로 배를 찌르겠다”, “어디 사는지 알아내어 찾아 가겠다”, “너의 자식 어떻게 되는지 보자”, “××년, 개××, 씨××” 등의 심한 욕설 등

□ 경미한 신체폭력

- 몸을 밀치거나 가벼운 구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을 가함
- 구체적인 예 :
 - 상담원의 멱살을 잡고 집밖으로 쫓아냄
 -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불쏘시개를 상담원에게 들이대며 위협을 가함
 - 주먹으로 상담원 어깨를 치거나 발로 걷어차
 - 상담원의 몸을 밀침
 - 주변의 물건을 상담원에게 집어던짐 등

□ 심각한 신체폭력

- 흉기로 위협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힘, 목을 조르는 등의 심각한 폭력을 가함
- 구체적인 예 :
 - 상담원의 목을 조름
 -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함 등

□ 자해

- 행위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시도함
- 구체적인 예 :
 - 상담 중 행위자가 부엌칼로 손목을 그으려고 시도함
 - 아동을 분리하려고 하자 행위자가 벽에 자신의 머리를 계속 박음

□ 성희롱/ 성적 수치심 유발

- 상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언어를 구사함
- 구체적인 예 :
 -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 건네기
 - 음흉한 눈빛으로 상담원의 몸을 훑어보기
 - 남성 행위자가 여성 상담원에게 “옆에 앉아라, 가까이 다가와서 상담하라”고 종용함
 - 상담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전화를 걸거나, 결혼하자는 등 치근거림 등

□ 기타 공포분위기 조성

- 언어폭력, 신체폭력, 자해 이외의 기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행위
- 구체적인 예 :
 - 사전 연락없이 기관에 찾아와서 바닥에 드러눕기
 - 침을 뱉거나 술 취한상태에서 난동 부리고 사무실 기물을 파손함
 - 상담원의 출퇴근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상담원을 기다리기
 - 아동보호전문기관 출입구의 홍보판과 출입문 손잡이에 불을 지름
 - 상담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임 등

3. 상담원 신변안전 위협 사례

가.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폭력 및 기물 파손 사례

1) 가족상황

성 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김○○	남	42	친부	동거	단순노무직
김○○	남	9	피해아동	동거	초 2년
김○○	여	8	여동생	동거	초 1년

2) 사례내용

부가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됨. 아동은 신고 당시 친부의 폭행(아동의 머리를 쳐 벽에 부딪힘)으로 인해 두피가 찢어지는 외상을 입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후 피해아동은 응급치료와 CT촬영을 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였음. 친부는 평소에도 자주 아동을 신체학대 하였으며, 알콜을 남용하고, 아내와 이혼 후 혼자서 남매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 및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친부의 격일제 24시간 근무(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인해 밤에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도 있어 방임도 발생하고 있었음.

현장조사이후 아동을 아동양육시설에 일시보호 조치함. 이후, 친부와 상담 및 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을 귀가 조치하였으며 친부의 양육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구종합사회복지관에 가정서비스 지원을 의뢰함.

2007년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친부가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고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임을 발견하고, 친부의 시설입소 동의를 얻어 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킴.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아동의 그룹홈 입소 후, 친부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습으로, 술을 마신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옴. 아동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며 여자 상담원 이름을 부르며 눈을 부릅뜨고 위협적으로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상담원과 몸싸움을 벌임.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얼굴을 쳐 상담원의 안경이 날아감. 본 기관에서 지구대에 신고하여 친부를 귀가 조치하였음.

몇 달 후 친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아동의 귀가에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탁자를 덮고 있던 유리를 깨뜨렸고, 탁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남.

나. 가정방문 중 일어난 상담원 상해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박○○	여	-	조모	비동거	
최○○	남	43	친부	동거	
이○○	여	42	친모	비동거	
최○○	여	18	피해아동1	동거	고 3년
최○○	여	17	피해아동2	동거	고 1년
최○○	여	15	피해아동3	동거	중 2년
최○○	여	13	피해아동4	동거	초 6년
최○○	남	11	피해아동5	동거	초 4년

2) 사례내용

친부는 7년 전 친모가 가출한 후, 수시로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 및 정서학대와 방임을 가해옴. 병원 진단 결과 아동들 대부분이 우울증 및 불안 증세를 보였고, 피해아동1의 경우 벽돌로 맞아 전치 2주, 몽둥이로 맞아 4주 진단을 받음. 친부는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정신과 전문의 소견으로 성격장애가 의심되었음.

초기 개입 당시 친부는 기관에 비호의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상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던 중 친부가 자신을 때린다고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원은 관할 지구대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가정방문을 하여 친부와 상담을 실시하였음. 그 당시 친부는 술에 취해 있었고, 화가 난 친부는 상담원에게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음. 이에 상담원은 아동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에게 아동의 보호에 대한 설득을 부탁함. 아동들은 바로 그룹홈에 일시보호조치하였으나 다음날 그룹홈 위치를 알고 친부가 찾아와 강제로 데리고 갔음.

이후 친부의 괴롭힘을 참지 못했던 피해아동1, 피해아동2, 피해아동3이 가출하였고 상담원에게 보호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룹홈의 위치가 친부에게 노출되었으므로 상담원은 청소년 쉼터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을 일시보호 하였고, 관할 시청에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 아동들을 양육시설에 입소시켰음.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친부를 고발 조치하였고 친부는 재판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상담원이 친부상담을 위해 가정방문하였을 때, 친부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는 연탄보일러 뚜껑을 집어 들고 상담원에게 던지려고 하였음. 이에 상담원이 친부를 진정시키자 친부가 보일러뚜껑을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이 동행한 상담원의 발등을 찍어 동료상담원이 전치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음. 친부는 바로 집안(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상담원이 친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친부를 온몸으로 잡았음. (상담원이 온몸으로 친부를 만류한 이유는 이미 친부가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아동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고, 당시 친부가 칼을 찾으러 가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임). 상담원이 친부를 온 몸으로 저지하는 상황에서 친부는 상담원을 힘으로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상담원은 왼쪽 어깨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음. 당시 상담원은 어깨가 너무 아파 그 자리에서 힘으로 어깨를 끼워 맞췄으며 병원진단결과 전치 2주였으나 탈골된 상태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기간이 더 나왔을 것임.

이후 본 기관의 고발조치로 친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부는 수시로 상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칼로 찌른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함.

학대행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위협을 당한 이후로 상담원은 현장 조사나 가정 방문 할 때 학대행위자가 흥분하고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 본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심장이 뛰고 불안함. 또한 친부가 집주소를 알고 찾아오거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으며, 집이나 기관 사무실에 있을 때 항상 문을 닫아 놓고 생활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음.

다. 법원 증언 후 발생한 상담원 신변위협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윤○○	남	51	친부	동거	
조○○	여	41	친모	비동거	
윤○○	여	10	피해아동	동거	초3

2) 사례내용

2003년 5월 친부에 의한 성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됨. 이웃주민이 아동의 성기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아동에게 묻자 아동이 친부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함.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으로부터 성학대 진술을 받음. 아동은 자신의 잠지에 친부가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고 친부의 고추를 자신의 혀로 빨도록 하였으며 포르노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고 진술함. 아동은 친부가 매일 자신의 잠지를 만져서 같이 살기 싫다고 진술함.

병원진단을 받은 결과 ‘치녀막부분과열의증’으로 나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하여 친부를 구속시킴. 아동은 경찰 진술을 마치고 쉼터에 입소됨.

재판진행 과정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증언 출두하여, 아동의 지능에 대한 의견과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 진술함(증언내용: 아동이 어린 나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으며, 해부학적 인형을 이용한 상담시 아빠인형의 성기를 보고 각성상태를 보임). 친부

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형 집행완료 후 출소한 친부는 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을 하여 “당신의 증언으로 징역이 1년 6개월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지 않으면 무력으로 처치하겠다고 협박함. 친부는 이후 현재까지도 기관에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자신이 징역을 살게 된 핵심원인은 상담원의 증언이며, 따라서 그 상담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법이 심판하지 못할 때는 자신이 심판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음.

라. 학대행위자가 흥기로 상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백○○	남	51	친부	동거	무직
이○○	여	33	친모	동거	무직
백○○	남	12	피해아동1	동거	초 5년
백○○	남	10	피해아동2	동거	초 3년
백○○	여	8	피해아동3	동거	초 1년
백○○	남	7	피해아동4	동거	유치원
백○○	남	5	피해아동5	동거	-

2) 사례내용

친모는 청각장애 2급과 정신지체2급의 중복장애 1급이며, 양육기술 부족으로 아동들에게 신체학대를 하고,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친부도 양육기술 부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이유로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며, 늘 몸에 칼을 소지하고 있음. 아동들은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아동1은 정신지체 1급으로 동생에게 칼을 휘둘러 아동의 코를 베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음. 친모는 아동들과의 의사소통 시 아동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은 찍히거나 맞은 상처자국들이 많이 있었음. 또한 장기적인 방임으로 인해 아동들의 사회성과 인지능력이 매우 낮은 편이고, 신체발육 및 건강상태도 불량한 상태였음.

친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매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추후 친인척의 도움으로 친부가 아동들에 대한 위탁가정보호에 대해 동의함. 아동1은 장애아동시설에 보호 조치하였으며, 4명의 다른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면서 학대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초기 상담 진행 시 친부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몸에 소지하고 있는 칼을 휘둘러, 친부가 휘두른 칼에 상담원의 손이 베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후에도 친부는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상담원의 접근을 거부하였고, 집 마당에 널려있는 도구들을 휘둘렀음. 학대행위자의 위협에 상담원은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였음.

마. 학대행위자에 의한 전화협박 및 신체폭력 사례

1) 가족상황

성 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서○○	남	51	친부	비동거	무직
최○○	여	40	친모	동거	치매노인돌보미
서○○	남	8	피해아동	동거	초 1년

2) 사례내용

친부와 친모는 별거중이며 아동은 친모와 함께 살고 있음. 아동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아 친모가 친부에게 ‘아동을 데려가라,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연락하면 옆집에 사는 친부가 찾아와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학대 및 폭언을 함.

현장조사 실시 결과 아동은 머리가 많이 뽑혀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최초 친부 및 아동상담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으나 친부가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며 상담을 거부한 채 아동을 데리고 가버렸음. 다음날 학교를 찾아가 아동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담임선생님에게 아동의 모니터링을 부탁함.

이후 친부가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가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였으며, 친부는 현장범으로 검거되어 경찰서에 수감되었음. 이후 친모, 친부와 친부의 가족들이 함께 가족 상담에 참여하였으며 친부와 친모가 아동의 쉼터 입소 및 치료에 동의함.

아동은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며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친부와

친모는 합의 이혼을 함. 서로간의 협의 하에 친부가 아동 양육권을 가지기로 함. 현재 친부는 본 기관의 부모교육에 참여하며, 아동과 친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2~4주에 한번 씩 원가정 복귀 훈련을 하고 있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아동이 친부에게 상담원이 다녀갔음을 얘기하면 친부는 상담원에게 '남의 가정사에 니가 뭘데 끼워드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족이 파탄 났다'며 '복수하겠다, 칼로 배때기를 찢러 죽이겠다, 조심해라 찾아 가겠다'라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였음.

또한, 이후 친부 상담 시 상담원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며 칼을 찾으러 다니는 등 상담원을 협박 함.

바. 학대행위자의 언어적 · 물리적 폭력행사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김○○	남	44	친부	비동거	무직
임○○	여	44	친모	동거	주부
김○○	여	16	언니	동거	고 1년
김○○	남	11	피해아동	동거	초 5년
김○○	여	5	동생	동거	유치원

2) 사례내용

아동의 친부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지내며, 친모도 직업이 없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아동은 배변문제로 인해 친모에게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음.

부모가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여 가족이 다니고 있는 교회목사님을 통해 부모를 설득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 아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리며 꾸준히 설득한 결과, 아동모가 기관의 개입에 동의하였음. 아동의 상처받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개선하고, 배변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심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함. 현재, 아동의 배변문제는 많이 개선된 상태이며, 모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부모가 사례개입을 완강히 거부하며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며 사례개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음.

이후 모는 기관의 개입에 대하여 다소 마음이 열렸지만 수시로 전화로 개입상황을 확인하며 본인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폭언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는 등의 위협을 가함. 부는 기관의 개입자체를 용납하지 않으며 가정방문하는 상담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함.

위와 같은 신변안전위협으로 인하여 본 상담원은 사례개입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웠으며, 신변안전의 미담보로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사례개입에 어려움을 겪었음.

사. 학대행위자의 기물 파손 및 기관 무단침입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박○○	남	38	친부	동거	-
박○○	여	6	피해아동	동거	초 1년

2) 사례내용

부자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정이며 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 모는 아동 출산 후 부와 이혼했으며 현재 연락 두절된 상황임. 조모가 서울에서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수입으로 아동 가정을 돕고 있고, 주말마다 아동 집에서 지내며 아동 양육 도움.

부는 공황장애로 인해 아동양육이 힘들어 아동을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4시간 어린이집에 아동 보육을 의뢰함. 부는 최근 두 번의 이사와 아동 초등학교 입학에 신경을 많이 써 공황발작이 심해졌고, 심한 두통으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밥을 챙겨주지 않는 등의 방임상태가 지속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현장조사 실시 후 아동방임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되어, 아동을 일시보호하며 심리검사 및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를 제공함.

아동 부는 병원 치료 받으며 건강이 좋아졌고,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 재혼을 했다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음. 사례관정위원회 사례 논의 후 아동의 퇴소조치를 결정하고 아동부의 서약서 작성 후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킴.

아동의 원가정 복귀이후 아동부에게 주1회 부모교육 및 내방상담 실시

하고 있으며, 아동에게는 주1회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 실시함. 또한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부는 사례 담당자와의 사전 약속 없이 아동 면접이 불가능함을 알리자 본 기관에 조모와 찾아와 아동을 보게 해달라며 협박하고, 계속적으로 전화함.

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동 면접이 불가능하자 부는 조모와 맨홀뚜껑으로 기관의 외부자동 유리문을 파손하고 기관에 무단 침입함.

부는 인근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으며 지구대에서 상담원에게 “아는 조폭을 불러 당신들 목을 다 따러가겠다”, “일단 갇빵에 넣어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람 목 따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당신 목을 따러가겠다” 등의 협박을 하고 상담원에게 폭력을 사용하려 함.

부의 협박과 행패가 계속되어 부는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며 공공기물 파손죄로 벌금선고를 받고 귀가조치 됨.

그 후 부는 아동 퇴소 전까지 하루에 3-4차례 전화를 하여 상담원에게 “오늘 퇴근길 조심해라. 내가 4시부터 그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차를 매일 바꾸고 변장을 해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다보면 당신 하루는 만나지 않겠느냐”, “당신 성대를 따서 말도 못하게 하고, 발목 이랑 팔목을 절단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해 주겠다”, “내가 오늘은 아는 조폭을 시켜 사시미를 준비해뒀다. 당신 목을 따러 갈 테니 기다려라” 등의 협박을 함.

아. 학대행위자가 흥기를 사용해 상담원을 위협한 사례

1) 가족상황

성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신○○	남	38	친부	동거	무직
윤○○	여	36	계모	동거	주부
신○○	남	10	피해아동	동거	초3
이○○	남	10	이복형제	동거	초3
신○○	여	2	동생	동거	-

2) 사례내용

아동의 계모가 아동을 방임하고 학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됨.

1차 현장 조사 시 친부의 강한 거부로 인해 아동과 계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후 2차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과의 개별상담을 실시함. 아동은 계모가 자신을 많이 혼내기는 하지만, 때리지는 않는다고 진술함. 또한, 주변인(주인집, 아동 담임선생님, 교감 선생님) 조사를 통해 아동 가정과 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 주변인 조사결과 아동과 계모사이에 큰 문제가 없으며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계모와의 상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이후 아동과 계모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1차 현장 조사 시 집 안으로 들어가 상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친

부가 방에서 나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조사파일과 신발을 집 밖으로 내던지며 상담원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밀침. 이에 진정시키고 상담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동 부는 멱살을 잡은 채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함. 흥분한 상태가 지속되자 아동 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꺼내 상담원을 위협함.

이후 아동과 개별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하였으나 친부가 전화를 받아 상담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내 성질알지? 칼 들고 쫓아간다. 거기 어딘지 아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고 협박하며 상담원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위협을 줌.

자. 학대행위자의 상담원 성 희롱 사례

1) 가족상황

성 명	성별	나이	관계	동거여부	학교/직장
홍○○	여	74	친조모	동거	일용직
정○○	남	49	친부	동거	무직
정○○	여	14	피해아동1	동거	중2
정○○	남	10	피해아동2	동거	초3

2) 사례내용

아동들이 친부에게 신체 및 정서학대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됨. 친부는 2001년 친모와 이혼 후 아동들을 양육하였으며, 2007년 알콜 중독으로 인해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음. 친조모는 아동들의 부모가 이혼 후, 2001년부터 아동들을 양육함.

아동들은 친부에 의한 지속적인 신체 및 정서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참으면서 지내고 있으며, 친부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

현장조사 당시 친부가 알코올 섭취 후, 아동들에게 신체 및 정서학대를 가하는 상황이 발견되어 아동들을 긴급분리를 하여 3개월간 격리보호조치를 하였음. 이후 아동들을 원 가정 복귀 시켰으나 친부의 알코올중독증세가 심해지고 학대상황이 지속되어 친조모의 동의를 받아 친부의 강제입원을 진행하였음.

친부의 퇴원 후 지속적인 아동 상담 및 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친부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완강히 거부하여 2008년 1월부터 아동들의 치료를 중단하였고, 아동지킴이 서비스도 2008년 5월에 중단한 상태임. 추후 학교와 연계하여 아동 상담 진행 후 친부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3) 상담원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은 내용

아동들을 시켜 본 기관에 하루 10차례 정도를 전화하게 하여 아동들이 전화를 걸면 친부는 옆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상담원이 친부를 바꿔달라고 하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함.

여자 상담원이 상담을 위해 약속을 잡고 기관을 내방할 것을 권하니 “내가 보고 싶으냐? 건들지 않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음.

친부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여자 상담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함.

IV.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관련
문제점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조사권 미부여

- 아동복지법 제25조에는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0조'에는 조사권한을 가진 조사주체가 관계공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한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법적인 조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이처럼 상담원의 법적 조사권이 확보되지 않아, 현장 조사 또는 사례개입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강한 거부와 저항에 부딪혀 아동의 안전 확보와 학대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2. 경찰의 현장조사 동행 협조 미비

-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음.
- 하지만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아동학대사례개입 시 경찰동행을 요구하면 경찰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동행요청 시 상호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상담원이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과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의

비협조로 인해 경찰동행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자에 의한 욕설·폭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김.

3. 상담원의 법원 증언 시 신분노출로 인한 신변위협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을 통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을 요청하며, 수사과정 중 참고인 진술을 비롯하여 사실조회서 작성 등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자신이 담당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얼굴이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증인반대신문 등을 통해 노출됨으로써, 학대행위자로부터 상담원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가족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학대행위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무죄, 집행유예 등이 판결되거나 형 집행완료 후 출소와 같은 변화가 생기면서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개인과 그 가족에게 보복성 협박 및 폭행

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의 보복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담원을 보호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상담원들이 위험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임.

4. 상담원 소진 및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은 상담원의 업무수행태도 및 수행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04년 전국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담원 소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상담원 소진과 정서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가 소진 및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공계순, 2004 ; 박지영, 2008; 윤혜미·박병금, 2004)를 통해 보고되고 있음.
- 소진은 단순히 상담원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을 통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함.⁹⁾

8) 신범수,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003년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이직 고려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고려해 본 적이 있거나,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¹⁰⁾ 공계순(2005)의 연구에서도 신변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낄수록 상담원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¹⁾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정확한 사례판정, 아동학대 후유증 치료 및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상담원의 전문성이 요구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아동학대전문상담원 100시간 기본교육과정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신변안전 위협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서비스의 전문성 및 지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9) 공계순,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10)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11) 공계순,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V. 외국의 상담원
신변안전보장제도 탐색

1. 미 국

가. CPS Worker 신변안전보장 제도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연방정부와 주(州)정부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아동보호의 일차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정책시행은 개별 주정부에 주어지고 연방정부는 법적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함.¹²⁾ 각 주정부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개입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담당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³⁾
- 아동보호서비스담당부서(Child Protective Services) 직원들은 법적으로 현장조사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경찰에 의한 협조도 법에 의해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¹⁴⁾ 따라서 CPS 워커가 신변안전 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가족부에 해당하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Children's Bureau(아동 국)에서는 CPS 워커의 신변안전에 대한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CPS Manual을 발간함.¹⁵⁾

12) 박세경 외,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1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선진 각 국의 아동보호체계비교- 미국·영국·호주-

14)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15) Diane Depanilis· Marsha L. Salus, 2003, Child Protective Services : A guide for Caseworkers

※CPS Manual 내 케이스워커 안전 관련 지침

케이스워커의 안전을 확보하는 첫 걸음은 초기접촉이전에 상황의 위험성을 사정하는 것이다. 케이스워커가 초기사정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에 대한 위험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케이스워커가 고려해야 할 질문들이다.

-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가?
- 신고내용이 가족 구성원 중 정신질환, 약물사용, 불안한 상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가?
- 신고 시 총성이나 다른 무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 가족의 지리적 위치가 극도로 고립되어있거나 위험한가?
- 가족을 포함하여 이번이 두 번째 혹은 여러 번째 신고인가?
- 초기사정 일시가 일반적인 근무시간 이후로 잡혀있는가?

⇒ 앞의 질문 4개에 대한 대답이 “예”이면 초기사정 시 법의 집행을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지막 질문 2개에 대한 대답이 “예”이면 두 명의 케이스워커가 가정방문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담당자의 신분이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및 경찰에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경찰에서 워커의 차량 면허를 추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 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요소에 대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의 주와 연방에서 증인의 매수, 증인에 대한 협박, 사법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문제는 보호대상인 증인의 범위와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위해로부터 포괄적인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임.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증인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위한 보호제도는 전무한데 반해 미국은 일부 주 및 연방정부에서 증인의 범위, 위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연방 증인보호법의 주된 입법목적도 보호대상 등의 확대에 있음.¹⁶⁾

□ 일리노이 주에서는 증인을 구두로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증인에 대한 위해행위로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위해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등이 증인과의 대화 및 접촉금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제화하고 수사기관에 대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경호의 제공 등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음.¹⁷⁾

다. 사회복지사 신변안전보장 제도

□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 폭력은 미국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16) 서주연, 2005,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17) 고성철, 2007,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의 심각한 이슈임.¹⁸⁾

□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워싱턴 주,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사회복지사와 케이스 워커가 업무수행 중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¹⁹⁾

□ 뉴저지 주 소년·가족서비스부(Division of Youth and Family Services: DYFS) 사회복지사 신변안전보장 제도²⁰⁾

- 신변안전 가이드북 발간

: ‘직원 안전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 DYFS 실천현장 가이드’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발간함. 가이드북은 외상, 스트레스, 슬픔 대처 및 신변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신변안전 훈련 제공

: 모든 DYFS신입워커들은 반나절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워커 신변안전’에 대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 훈련은 경찰에 의해서 제공됨.

- 팀 접근(Buddy System) 정책

: “Buddy System”이라고 불리는 팀 접근(경찰, 수퍼바이저, 팀원, 위기개입 워커, 상담가, 기타 전문가)을 DYFS 공식정책으로 도입함.

18) Christina E. Newhill & Sandra Wexler, 1997, Client Violence towar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Social Workers

19) <http://www.opencongress.org/bill/110-h2165/text>

20) Nicholas R. Scalera, 1995, The Critical Need for Specialized Health and Safety Measures for Child Welfare Workers

※ Buddy System

워커는 아래와 같은 특정 현장 활동 시에는 반드시 Buddy와 동행하여 팀접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아래 혹은 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동행하도록 제안됨.

- ① 과거 폭행이나 폭력 위협이 있었던 클라이언트인 경우
- ②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학대자를 만날 시
- ③ 과거 기관에 신고 된 기록이 없는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초기 조사 시
- ④ 약물 사용 및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곳을 처음 방문할 경우
- ⑤ 비자발적인 아동격리보호가 일어날 경우
- ⑥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 혹은 추가적인 슈퍼비전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동시킬 경우
- ⑦ 과거에 폭행 및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워커일 경우

□ 사회복지사안전법(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안 발의

Dennis Moore 하원의원이 2007년 3월 'Teri Zenner 사회복지사 안전 법(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안을 제출함. 캔사스 주 Johnson County 정신건강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던 Teri Zenner는 2004년 클라이언트 가정방문 도중 클라이언트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Teri Zenner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됨.²¹⁾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보조하는 기금(보조금) 프로그램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²²⁾

21) http://ehstoday.com/news/ehs_imp_66244/

22) <http://www.opencongress.org/bill/110-h2165/text>

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NASW(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회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이 활발히 action 활동을 취하고 있음²³⁾.

2. 일 본

가. 아동상담소 직원 신변안전보장 제도

-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의 전달체계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도도부현·지정도시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아동상담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보다 용이하며 아동상담소라는 단일기관을 통한 서비스의 진행으로 서비스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됨. ²⁴⁾

- 일본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제 29조 및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해 법적으로 현장조사권을 지님²⁵⁾. 또한 아동복지법 62조에 의거하여 현장조사 거부시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어 상담원이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3) <http://www.socialworkers.org/advocacy/alerts/2007.asp?print=1>

24)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25) 박천만 이호균 공역, 2007, 일본의 아동학대

- 아동상담소장은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하여 직무의 집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조를 요청받은 경찰은 이에 응하여야 함. 따라서 아동상담소는 상담원의 신변위험 등으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여 업무를 수행함.

나. 증인보호 관련 법·제도

- 일본의 증인보호제도는 200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인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음.
- 일본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3에는 증인신문 시 증인의 차폐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음. 이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과 방청인이 지켜보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경우, 그 정신적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증인과 피고인 또는 방청인과의 사이에 칸막이 등을 설치, 상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제도임. 차폐조치를 활용하면 증인의 신변노출을 방지할 수 있어 상담원 신변보호에 효과적임. 우리나라에서는 차폐조치가 명목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있음.²⁶⁾
- 또한, 교호신문(상호신문)제도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할 경우 피고인 등이 참여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하는데, 증인에 대한 보복우

26) 서주연, 2005,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려 등으로 증인이 증언하기가 어려운 경우 혹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압박을 받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퇴정하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일본형사소송법 제 304조의 2), 당해 증인이 특정의 방청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특정의 방청인을 퇴정시킬 수 있다(일본형사소송법 제 202조)고 규정하고 있음.²⁷⁾ 우리나라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여 증인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대면을 막는 규정이 있으나, 당사자의 참여권 배제의 사유가 협소하여 상담원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3. 대 만

- 대만에서는 여성 및 아동보호전용회선 '113'(World Vision 위탁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24시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신고전화를 받음.
- Intake 당시 상담원이 긴급사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사례인 경우에는 경찰서로 이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 25개 현·시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센터로 신고사례를 이관함.
- 긴급·고위험 사례는 경찰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긴급사례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간기관 CCF의 상담원(사회복지사)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

27) 고성철,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2007

함. 이처럼 경찰과의 현장조사 동행으로 인해 상담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도모함.

4. 캐나다

-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는 연방국가로 캐나다의 아동복지법은 각 주에서 제정되어 법률 명칭도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정책은 없음.²⁸⁾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주(州)법인 ‘아동 및 가족서비스 법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에 의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기관 Children’s Aid Society)이 주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하에 아동보호사업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음.²⁹⁾
- 온타리오주의 아동 및 가족서비스 법(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15조 3항의 CAS(Child’s Aid Society :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기능에 조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AS(Child’s Aid Society)직원은 법적 조사권을 지님.
- 또한, CAS(Child’s Aid Society)직원이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에 학대 행위자의 거부나 저항으로 인해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즉

28) 박천만 이호균 공역, 2007, 일본의 아동학대

29) 보건복지부, 200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4차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진국 연수보고서

아동보호사례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CAS 기관에 대한 경찰의 협조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VI.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1. '아동복지법 제 30조' 조사자의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명시

- 외국의 아동학대서비스 상담원이 법적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담원의 조사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저항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한 신변안전위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 이에, '아동복지법 제30조' 조사자의 범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포함시켜,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원의 조사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대여부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더불어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담원에게 위협을 가하였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현재 아동복지법 제41조에는 30조의 조사권한을 지닌 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학대행위자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를 하였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41조의 벌칙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조사권을 법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협조요청 시 경찰의 동행의무에 관한 법 조항 제정

-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은 상담원의 신변안전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며,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요청 시 경찰이 동행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 내에 경찰동행을 통한 상담원의 신변안전 확보 및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협조요청 시 반드시 경찰이 동행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개정된 법이 실효성을 지니도록 경찰법 등 관계법령에도 개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3. 증인신상정보 비밀보장 및 증인보호제도 마련, 증인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

- 현재 직접적인 피해자인 증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증인에 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위한 보호제도는 전무함.

- 형사소송법 제165조에 의한 법정 외 신문이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 2 제3호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9에 의한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의 방식을 통하여 증인 보호가 가능하며,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업무처리내규 상 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 법정에서 출석할 때 법원과 검찰로부터 특별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에서 실효성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증인으로 나설 경우, 위 제도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 더불어 더욱 현실적인 증인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증인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나 제도를 규정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함.

4. 가중처벌에 대한 고지 및 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신상이 노출되어 학대행위자로부터 보복성 협박 및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복역 완료 이후 당시 법정증인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보복범죄를 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죄 등에 대

한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음)에 의거하여 추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학대행위자에게 교육시키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5. 피고인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 행사범위 제한

-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 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형사소송법 제 35조, 제 266조의 3, 제 266조의 4).
- 이러한 열람 등사의 대상에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작성한 진술서, 그 상담원의 참고인 진술조서,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등도 포함됨.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적 사항이나 신상정보들이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노출되어 증인협박 및 사생활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사가 피고인의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증인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제2항), 법원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증인보호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66조의 4 제2항), 실무상 이는 실효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기록을 요청할지라도 참고인 또는 증인의 신상정보,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 부분만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 행사범위를 제한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6.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보완 및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신변안전 위협은 대부분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함.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는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의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매우 많음. 이는 매해 발표되는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며, 200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5,581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52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1%를 차지하였음.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가족보존을 기본가치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가족통합을 이루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를 사유로 수감된 학대행위자에 관해 보다 엄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행동교정으로 인한 상담원 신변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임.

7.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통지

- 개정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직접적인 범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은 아니지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통지 제도를 활용하여 아동학대로 인해 고소·고발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리상황 및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행위자의 형 집행 완료 후 출소 사실 등을 즉각 통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8. 정부의 상담원 신변안전 관련 재정지원

- 상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변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의 기준을 비롯하여 보편적이며 타당성 있는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³⁰⁾

30) 최윤아·이재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물리적 신변안전 환경실태와 개선책에 관한 연구, 2007

- 상담원 호신용 기구(가스총, 스프레이, 호루라기, 전기충격기) 마련, 출입구 인터폰 설치, 기관 내 응급벨 설치, 금속탐지기 도입 등 신변안전과 관련된 물리적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정부의 비용 보조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외에도 상담원 신변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원에게 상해보험과 호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VII. 참고문헌

- ◆ 고성철. 2007.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증인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 공계순.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 공계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2005 『한국아동복지학』, 19: 8-35.
- ◆ 김성희. 2003.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 박세경·서문희·서영숙·진미정·노성향·강주희.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박천만·이호균 공역. 2007. 『일본의 아동학대』, 高橋重弘 · 庄司順一. 2002. 福祉キーワードシリーズ 子ども虐待. 서울: 계축문화사.
- ◆ 보건복지부. 2008.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선진 각 국의 아동보호체계비교 - 미국·영국·호주-”.
-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제4차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진국 연수보고서”.
-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법률 메뉴얼”
-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 서주연. 2005.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 신범수.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 오승환. 2007. “학대아동보호사업평가 및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울산대

학교 산학협력단.

- ◆ 최윤이 · 이재연. 2007.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물리적 신변안전 환경실태와 개선책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269-287.
- ◆ Depanfilis, D. and Salus, M. L. 2003. "Child Protective Services : A guide for Caseworker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 Newhill, C. E. and Wexler, S. 1997. "Client Violence towar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Social Worker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3): 195-212.
- ◆ Scalera, N. R. 1995. "The Critical Need for Specialized Health and Safety Measures for Child Welfare Workers". *Child Welfare* 74(2): 337-350.
- ◆ <http://www.opencongress.org/bill/110-h2165/text>
- ◆ http://ehstoday.com/news/ehs_imp_66244/
- ◆ <http://www.socialworkers.org/advocacy/alerts/2007.asp?print=1>

※ 부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22호 시행일 2008.12.14]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개정 2006.9.27>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9.27>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 4.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3.24, 2008.2.29>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 2.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6조(아동위원)

- 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아동복지지도원)

-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7, 2008.6.13>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 원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9.6.14]

제10조(보호조치)

-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6.9.27>
 -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9.27>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제1항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조(친권상실 신고등의 청구)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9.27>

제13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 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5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6.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8조(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

-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1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2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

제2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 5. 아동학대사례관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4.3.22, 2005.7.13, 2006.9.27, 2007.10.17>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3]

제27조(응급조치의무등)

-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보조인의 선임등)

-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8조의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④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제28조의3(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3.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4.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5.7.13]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0조(조사등)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5.7.13>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7.13>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4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5.7.13>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7.13>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2조(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